대권도 진흥 및 대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27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민형배·정동영·김동아

양부남 • 이개호 • 김문수

안도걸 • 조계원 • 장경태

강유정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연구·전시·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원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②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공원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의료 인력을 둘 수 있다.